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채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6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의자 : 박채연, 김지근, 노세영,
신성봉,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7명)

1. 개정이유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정”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추가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변경

3. 근거법규 : 따로 붙임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및 제3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2021. 1. 29. ~ 2021. 2. 5.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인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중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장애인정 출산지원금”이라 하고, 같은 란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중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장애인가정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4.12.><개정 2020.3.9.>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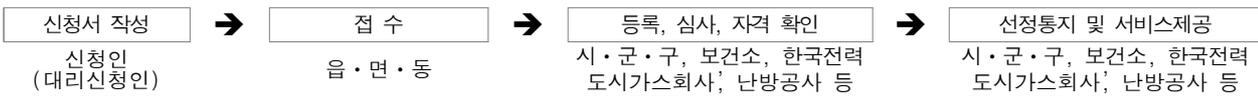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4조(지원기준)</p> <p>① (생략)</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4조(지원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장애인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3항과 같음)</p>

